"당신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❶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 어디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❷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누가?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 어떻게?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❸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①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②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가 작성한 서식도,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 가족 범위
①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②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www.LST.go.kr ● 문의전화 1855-0075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학적 처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CPR)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치료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위관영양과 같은 강제적 영양공급 지속적인 수액투여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무조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어르신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추후 가족들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작성 비용은 무료입니다. 혹시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케어링 김제점은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호자분들께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lst.go.kr 대표번호: 1855-0075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